

의안번호	제2747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의결 사항	
----------	--

소외도서 향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4. 1. .

소외도서 향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고성군수

1. 제안이유

2023. 12. 13.자로 운항을 시작한 「소외도서 향로운영 지원사업」 고성섬마을실호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우리 군 소외도서 내 주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 운항 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가.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 나.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교통편의 증진 지원)
- 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3.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2024. 4. ~ 2027. 3.
- 나. 위탁내용
 - 소외도서 향로운영 지원사업 선박 운영 및 정비 등 유지관리
 - 선장 및 선원 등 근무자 채용·교육·지도 감독
 -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자료관리 및 보고
 - 그 밖의 협약 당사자 간 합의한 사항

4. 기대효과

- 선박 운항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도서 내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 제공

5. 향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및 접수: 2024. 3. 4. ~ 3. 15.
- 선정 심사: 2024. 3. 19.
- 선정 통지: 2024. 3. 22.
- 민간운영위탁 계약체결: 2024. 3. 27.
- 선박 운항(계획): 2024. 4. 1.

6. 참고사항

- 가.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 붙임 1
-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 2
- 다. 관계법령: 붙임 3

소외도서 향로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계획

소외도서 향로운영 지원사업은 해운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I 추진 사유

- 2023. 12. 운항 시작한 고성섬마실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사업자 확보 및 위탁 필요
- 우리 군 소외도서 거주민의 기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공개 경쟁을 통한 위탁관리인 선발

II 추진 근거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제4조의2
 - 민간위탁 사유: 선박 운항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III 추진 현황

- '23. 3. 29.: 소외도서 향로운영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3. 6. 29.: 감척어선 확보를 위한 현장확인(거제시: 밴쿠버호 4.99톤)
- '23. 7. 21.: 감척어선 공익사업 활용을 위한 무상전환 승인요청
- '23. 8. 14.: 공익사업 활용 경남도 승인
- '23. 9. 22.: 주민설명회 개최(자란도)
- '23. 11. 29.: 민간 운영 위·수탁 계약 체결
- '23. 12. 13.: 고성섬마실호 운항 개시

IV**위탁 개요**

- 위탁기간: 2024. 4. ~ 2027. 3.
- 소요예산: 금 70,000천원(1년)
 - 세부 산출내역
 - (인 건 비) 운전원, 사무원 근로자 인건비 등 1식 × 50,000천원
 - (운 영 비) 유류대, 운영 소모품 등 운영비 등 1식 × 10,000천원
 - (기타경비) 보험료, 일반 관리비 등 기타경비 1식 × 10,000천원
- 위탁방법: 관내 도선업체 위탁
- 위탁내용
 - 소외도서 향로운영 지원사업 선박 운영 및 정비 등 유지관리
 - 선장 및 선원 등 근무자 채용·교육·지도 감독
 -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자료관리 및 보고
 - 그 밖의 협약 당사자 간 합의한 사항

V**위탁자 선정일정(안)**

- 모집 공고 및 접수: 2024. 3. 4. ~ 3. 15.
- 선정 심사: 2024. 3. 19.
- 선정 통지: 2024. 3. 22.
- 위탁 계약체결(계획): 2024. 3. 27.

소외도서 향로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소외도서 향로운영 지원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I 관련근거

-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3
-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II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소외도서 향로운영 지원사업 선박 운영
- 現수탁자 : 풍양카페리
- 위탁기간 : 4개월(2023. 12. ~ 2024. 3.)
- 위탁업무내용
 - 소외도서 향로운영 지원사업 운영 전반
 - 선장 및 선원 등 근무자 채용·교육·지도 감독

III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검토기준		검토결과
공 공 성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도서 향로운영 지원사업은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임 ○ 선박 운항 및 소규모 유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유사한 업무를 수행중인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 및 경제성에서 뛰어나 ○ 직영의 경우 현재 주3회, 1일 왕복 1회 계획중인 현재 사업의 특성상 본업으로 적절치 못한 급여 및 업무시간 등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무자 채용 어려움이 예상됨

검토기준		검토결과
효 율 성	② 서비스 공급 공공성 및 안정성	○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는 소외도서 지역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공공성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선박 운항이라는 전문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
	③ 경제적효율성	○ 기존 지역에서 활동중인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수행중인 업무와 유사하고 투입시간이 비교적 낮아 비용절감 가능 ○ 인력 유지를 위한 비용(직영의 경우 공무원 전환 가능성) 및 채용 절차상 행정절차 준용을 위한 추가비용 등 행정비용 발생
	④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성	○ 선박 운항의 현장경험이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인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 가능
	⑤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시설 운영 계획에 기반하여 사업 실적 및 자료 관리가 가능하며, 관련 자료는 통계 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사업 개선과 발전 도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고성군은 수탁법인 및 시설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으며, 위·수탁 계약체결을 통해 운영방식 및 사업 계획을 관리 가능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법인 및 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 취소 등의 조치 가능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관내 여객선·도선이 미기향하는 곳이므로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으며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과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
	⑧ 그 밖의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은 관내 도서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선박 운항이라는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필요

□ 검토사항

- **(공공성)** - 「섬 발전 촉진법」제13조의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고,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은 선박 운항이라는 전문면허가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나, 직영의 경우 인사 등 인력운용 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효율성)** 선박 운항과 관련하여 그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관련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가능. 또한 성과 측정, 지도·감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달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가능

□ 검토의견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모두 충족되며, 특히 전문적인 민간 전문인력 활용 가능성 및 운영 비용 절감 등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1. 15.]

□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선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승선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명 안전장비의 구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5.]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2.27. 조2767>

1. 공익정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목개정 2022.12.27. 조2767]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위탁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개정 2022.12.27. 조2767>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④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중요내용(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예산의 20퍼센트 이상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과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무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군의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의 의결
을 받으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2.12.27. 조2767>